

쌀농가 소득안정화 방안

1. 소득안정 대책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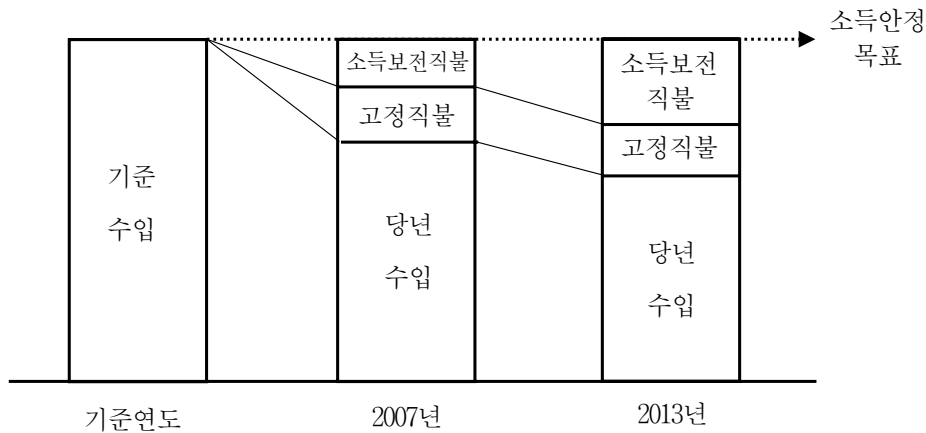
- 개방 확대로 쌀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.
 - 관세화 유예가 지속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수입량이 증가할 것인지, 관세화의 경우 특별품목이나 비교역적관심 등 특례조항 여부 적용 여부 등에 가격 하락 수준은 달라지게 됨.
- 농가의 불안감이 크면 쌀 협상 전략 수립 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협상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수 있음
 - 자칫 쌀농업 보호 명분에 치우치는 경우 실리를 챙기지 못할 수 있음
- 정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여 개방 확대 폭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쌀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
 -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제시하여 농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
 -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.

2.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

개 념

- 과거 특정 시점을 기준해서 쌀 농가의 소득안정 목표를 설정하고, 당해연도의 수입이 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AMS와 그린박스 형태의 직접 지불로 보전하는 제도임.
- 소득안정 목표는 과거 기준연도의 조수입에다 논농업 직불과 같은 이전 수입을 합친 수준을 의미함.

<소득안정 직불제의 개념>



소득안정 목표 대안

- 소득안정 목표는 1안) 기준연도의 조수입을 유지하는 것, 2안) 기준년도 조수입에서 X% 감축된 수준, 3안) 기준년도 가격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.
-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가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함.

기준년도 설정

- 과거의 고정된 기간으로 정하거나(1안, 2안의 경우), 3)안 처럼 최근연도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.
 - 고정직불은 과거의 고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그린박스에 해당됨

이행연도 설정 및 운영

- 소득안정을 위한 조치를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.
 - 제1단계: DDA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도까지
 - 제2단계: 제1단계에서의 소득지원사업 평가, 쌀협상 및 DDA 진행 상황을 고려해 3~5년에 지급할 고정지급액 수준을 설정함.

- 제1단계인 3년 동안(2005~2007) 소득안정 목표수준이 유지되도록 지원함.
- 제1단계에서 논농업 직불제를 고정 직불로 전환하고 지급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 운영
 - 다만 논농업 직불제에서 추구했던 다원적 기능의 보전 의무를 소득안정 직불제 아래 순응요건(cross-compliance)으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

3. 소득안정제도 도입의 조건

- 소득안정을 위한 변동지불 지급과 약정수매제는 AMS 사용에 있어서 경쟁적 이므로 소득안정을 위해 AMS 사용이 불가피하게 됨.
- 약정수매제는 허용대상인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여 식량안보를 위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 AMS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.
- 소득안정 직불제의 순응요건으로 농가로 하여금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고, 환경 친화적인 영농방식을 채택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가꾸도록 함으로써 농가 지원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함.

4. 기대 효과

- 소득안정 직불제는 시장 개방 확대의 환경에서 수급 균형을 촉진시킴으로써 쌀의 과잉생산, 재고부담, 재고관리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비용을 절감시키는 조치임.
- 이 조치를 통해 국내 쌀 가격과 국제가격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, 이에 따라 소비자는 쌀 가격의 하락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편 생산 농가는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음.